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위탁기간이 2024.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위탁법인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2. 추진근거

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위탁개요

가. 시설 및 수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시설장	개관일	직원	수탁법인	위탁기간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금하로11길 40, 2층 (금천구 가족센터 내)	84㎡ (25.5평)	전종미	2021.10.	1명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대표 : 송재민)	2022.01.01.~ 2024.12.31. (3년)

나. 주요 재계약 내용

1) 위탁기간 : 2025.01.01. ~ 2026.12.31.(2년 재계약)

※ 가족센터 위탁기간(2022.1.1.~2026.12.31.) 종료 후 가족센터 위탁사무로 포함하여 추진

2) 위탁업무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 시설물의 유지관리
-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다. 선정방법 :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계약 여부 결정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

라. 추진일정

1) 2024. 11. : 구의회 상임위 안건 보고

2) 2024. 12. :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3) 2024. 12. : 수탁기관 공고

4) 2024. 12. : 재계약 체결

4.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나.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의 유지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책임감 있는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

다. 민간위탁사무 자체 성과평과 결과 : 우수(평가점수 92점)

5. 관계법령

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 련 근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